

「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4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과장 김찬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평창군 지역의 원활한 민관 협력 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민관협력활동의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 - 평창군수가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민, 관련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활동을 말함
-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 - 군수는 군의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관협력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
 - 모든 주민, 민간단체 등은 스스로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임을 인식하고, 군의 시책과 위원회의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·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함

- 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 -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장 부군수, 위촉직, 당연직 위원 (안전건설과장)
- 민관협력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 - 군의 관련 시책에 관한 협의
 -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·제보
 - 재난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
 -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
- 협력활동(안 제6조)
 -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
- 위원회 회의(안 제7조)
 -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
 -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
 -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지역의 원활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 - 안 제3조에서는 군수, 주민, 민간단체 등의 책무
 -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
 -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협력활동
 -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.
상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
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
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지역의 원활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관협력 활동”이란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민, 관련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 등) ① 군수는 군의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관협력 활동(이하 “협력활동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.

② 모든 주민, 민간단체 등은 스스로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임을 인식하고, 군의 시책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·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구성) 군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3.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 - 가.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 - 나.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
 - 다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라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4.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협력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군의 관련 시책에 관한 협의
2.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3.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·제보
4. 재난발생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해당 활동 전개
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
6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협력활동) 위원회의 협력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: 협력활동 관련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예방 활동 수행

2. 재난발생시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대응활동 전개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.

1.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할 경우
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3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한다.

제9조(준용)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1. 위원장의 직무
2. 회의개최 통지, 의사 및 의결정족수, 회의록의 작성·보관
3. 관계전문가·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
4. 위원의 임기(연임제한은 제외한다), 위촉해제, 수당·여비 등 지급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운영규정) 위원회의 협력활동 협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